

# 포항공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2008. 9. 1

개정 2014. 7.15

개정 2024. 8.2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타당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업무와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기관 소속 직원(박사후연수생, 인턴연구생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기관 내·외 동물실험시설에서 해당 직무(외부과제 포함)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조사, 검정·검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다른 기관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기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사후 처리
3.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시설

제3조(총장의 책무) ①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해야 한다.

③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위원장에게 동물보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⑥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전문수  
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

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수의사에게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생산, 도입, 관리, 실험)·종료(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5.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7.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현황

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미비점 개선 방안

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감독·평가 및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기관 내 전임수의사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 간사 및 전임수의사에게 상정 안건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간사 및 전임수의사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10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포항공과대학교의 내부 인터넷 망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④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연구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3. 고통등급의 변경
4.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5.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6.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7.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8.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9.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제12조(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

## 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10.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  
· 훈련 이수 여부
11.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제14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포항공과대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보호법」 제5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

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고충과 불만사항을 기관 내 종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요구받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기관 수의사에게 동물실험을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만사항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증명은 법률 또는 기관별 규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장 심의 후 감독과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제17조(심의 후 감독)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 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해당 동물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⑦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①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을 별표1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연구자들에게 동물실험계획서 심사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_\_\_\_\_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실험 제목	
실험 기간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실험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input type="checkbox"/>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
동물실험 수행자 (1)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input type="checkbox"/>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
동물실험 수행자 (2)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input type="checkbox"/>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

실 험 동 물	동물종류	<input type="checkbox"/> 마우스 <input type="checkbox"/> 랫드 <input type="checkbox"/> 토끼 <input type="checkbox"/> 기니피그 기타(                      )	미생물학적 등급	<input type="checkbox"/> SPF <input type="checkbox"/> 준SPF(Clean) <input type="checkbox"/> 일반(Conv.)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계 통		사육 희망 장소	<input type="checkbox"/> barrier구역 <input type="checkbox"/> Semi-barrier구역 <input type="checkbox"/> 일반구역
	성별/수량	♂:        ♀:	반 입 예 정 일	년        월        일
	체중/주령	gram/        주령	동 물 구 입 처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처에 사전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위험군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3위험군(병원체:                      ) <input type="checkbox"/> 제4위험군 (병원체:                      )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실험 지침에 따름
	병원체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1군감염병(병원체:                      ) <input type="checkbox"/> 제2군감염병(병원체:                      ) <input type="checkbox"/> 제3군감염병(병원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2. 연구 및 실험개요

<b>1. 연구목적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b>	
<b>2. 동물실험의 필요성</b>	
<b>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b>	
<input type="checkbox"/>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input type="checkbox"/> PubMed <input type="checkbox"/> SCOPUS <input type="checkbox"/> 한국학술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b>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b>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 (시험물질, 대조물질,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
-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혈액, 뇨, 조직 등)

※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필요 사유 (단 원칙적으로 불허함)

**7. 환경풍부화(Enrichment),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8.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 고통등급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고통등급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9번에 사유 기재

9.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마취제 · 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input type="checkbox"/>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input type="checkbox"/>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상세 사유 기재)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p>*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p> <p>*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p>	



##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실험기간	20 . . . . ~ 20 . . . .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제목					
실험목적					
승인실험기간	20 . . . . ~ 20 . . . . 총 ( 2, 3 )년 승인 중 ( 2, 3)년째				
동물실험계획	<input type="checkbox"/> 변경없이 계속 <input type="checkbox"/>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승인받은 실험계획	1년차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2년차				
	3년차				
역할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연구책임자					
실험수행자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제목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험변경 내용	<input type="checkbox"/>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동물 종 추가 또는 변경 <input type="checkbox"/>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input type="checkbox"/> 진정.진통.마취 방법 <input type="checkbox"/> 안락사방법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input type="checkbox"/>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input type="checkbox"/> 고통등급의 변경 (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수술방법								
동물종								
동물 사용수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진정.진통.마취 방법								
안락사방법								
실험기간변경/ 연장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성 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그 외								

##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
(기 접 수 번 호)			
과 제 명			
실험제목			
실 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평가기준			
1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7	환경풍부화,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연구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8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9	Grade D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요구한 동물 종(계통, 등급)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Grade E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연구사육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5	요구한 동물 마리수의 근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10	인도적인 종료시점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6	동물실험 방법(프로토콜)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11	동물구입처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12	연구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평가결과 및 의견		
결 과  <input type="checkbox"/> 원안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 후 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 후 재심 <input type="checkbox"/> 승인 거부/미승인	의 건          	
	평가위원	(인)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 1.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육이수내용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과 제 명	
실 험 제 목	
실 험 기 간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승 인 일 자	
접 수 번 호	
승 인 번 호	
심 의 위 원 의 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포항공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 IACUC Protocol Approval

### 1. Original protocol information

Protocol Title		
Principal Investigator	Affiliation	
	Name	
Study Period		

### 2. Approval

Review Date	
Approval Date	
Approval Number	
Approval Details	

This animal care and use protocol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ACUC at POSTECH

20 . . .

Chairperson *signature*

##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위원회 승인번호				
과 제 명				
실험제목				
변경 승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변경승인번호, 승인일 : ) 변경내용:			
연구 책임자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동물실험 수행자				
내 용	승인사항		변경사항	
실험 기간				
동물 종 (계통)				
동물품질등급				
총 사용 마리수				
고통등급				
안락사방법				
기타사항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 보고 합니다.				
연구책임자			년	월
(인)			일	

## 심 의 후 감 독 세 부 점 검 표

가. 과제 정보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담당자				

나. 연구현황표

내 용	승인 사항 <small>*승인된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합니다.</small>	진행 현황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현재
동물실험의 종류 (해당사항 모두표시)	<input type="checkbox"/> 시료의 투여 및 접종 <input type="checkbox"/> 외과적 처치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조사 <input type="checkbox"/> 발암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시료의 투여 및 접종 <input type="checkbox"/> 외과적 처치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조사 <input type="checkbox"/> 발암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통등급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D <input type="checkbox"/> E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D <input type="checkbox"/> E
실험동물정보	- 동물종(계통) : - 마리수 : - 구입처(반입일) :	- 동물종(계통) : - 마리수 : - 구입처(반입일) :
사육장소	<i>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i>	
실험장소	<i>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i>	
진정/마취, 진통/항생제		
인도적 종료시점		
안락사방법		
위해물질 사용여부		

다. 연구수행현황

구분	연구수행과정	Y	N	N/A	일시	실시자
1.	실험계획서 승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동물실험시설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동물 구입 또는 사육상에서 입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동물검역 또는 순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실험수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안락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사체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종료보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세부점검표

구분	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b>I. 동물실험계획서와 인력관리</b>						
1.	연구책임자와 실험수행자가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사용지침 등, 기관의 동물 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실험수행자가 연구수행을 위한 최신의 계획서와 수행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승인된 최종 계획서를 실험공간에 비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실험수행자가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번호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사육장소가 계획서에 기재된 장소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II. 연구과정</b>						
1.	동물의 반입은 계획서 승인 후 수행되었는가? (동물반출입기록과 비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동물종, 계통, 연령, 수량 및 구입처가 승인된 사항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반입동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검역실 체류기간과 관찰이 수행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가 사육케이지에 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동물사육장소가 적합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특별한 주거 및 사육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해당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동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동물관찰자 지정 및 인수인계 절차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주말과 휴일, 비상사태 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주사제, 혈액채취 및 유체 수거량 및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수행된 실험과정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실험수행자가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실험수행자는 적절한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갖추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 시 수의사의 조언(동물의 취급, 진정, 마취, 안락사, 수술 침 수술전·후 관리 등)을 얻을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마취(해당 시)						
1.	마취제의 보관 및 사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통기한,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흡입마취용 기구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동물이 적정 농도의 마취 준수 절차를 통해 의식이 없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약물/마취제/진통제를 정확하게 투여하고 기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계획서에서 승인된 기법에 따라 마취를 수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수술(해당 시)						
1.	수술 장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생존 수술을 위한 멸균기구, 멸균장갑, 수술용 마스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시술자는 마취와 수술,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절개는 고통감소를 위해 적절하며 봉합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수술진행 중 체온유지를 위해 온도 조절장치를 사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멸균된 기구들은 사용전 적절하게 보관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 (유효기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된 진통제/항생제를 사용하고 투여정보(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가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수술한 동물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수술내역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수술 후 사후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 인도적 처리기준 및 고통감소 방안						
1.	실험수행자가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분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계획서에 기재된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기준을 실험수행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예기치 못한 동물의 질병발생 시에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시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동물탈출 및 위해요소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가학적인 환경과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I. 기록관리						
1.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기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기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이 관리되고 있는가?(별지4호서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동물실험시설의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적정하게 관리기록 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동물반출입내역을 기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VII. 안락사</b>						
1.	계획서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안락사 및 사체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수행되는가? (처치 전의 동물 또는 사체가 방치되어 있진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안락사 수행 후 사망확인을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VIII. 사육 또는 번식(해당 시)</b>						
1.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장소에서 사육·번식하여 이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개별동물에 식별 가능한 이표, 표식 등의 기록된 부착물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옮겨 사육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기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동물종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사료는 유효기간 이전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사료와 깔짚은 오염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일반쓰레기 등과 격리하여 보관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깔짚의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동물을 사육장소 외의 실험실에 24시간 이상 계류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랫드, 마우스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서 내 승인절차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예기치 못한 응급 발생 상황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환경풍부화(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미고려시 동물실험계획 승인근거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질병 및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교배, 출산, 이유 기록 등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번식사육 시,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작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견	특이사항 기재 시 발생장소, 관련 동물사항을 포함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확인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심의 후 감독표 작성요령>

1.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일 현재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대상으로 하나, 완료된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2. 원칙적으로 점검자는 위원이 되며, 확인자는 각 동물시설의 시설운영자, 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함
  3. 동물실험의 각 단계에서 점검할 수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N/A로 표시하고 비고에 사유를 적음
  4. 심의 후 감독은 실험계획서대로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라. 세부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준수여부 또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함
  5. 동물실험계획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검항목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정 내 기준의 준수여부 및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작성함
- \*기관운영규정을 대체하는 시설이나 부서별 운영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비고에 해당 규정명을 적음(가급적 조항명이나 내용 포함)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실태조사일시 :

시설명				
구 분	점검항목	양호	보통	미흡
운영	기관 내 동물실험시설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 ( ) 명 - 구성 : 의사( ), 행정인력( ), 관리원( ), 기타( )	여/부 ( )		
	동물종별 관리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가?	여/부 ( )		
	시설 내 별도의 운영 규정이나 표준절차가 있는가? - 규정명 - 재개정일 - 규정 비치 및 유지.관리 여/부 ( <i>의견기재</i> )	여/부 ( )		
	재해, 응급, 비상상황 대응 대책이 있는가? - 비치 및 교육 여부 : 비치 ( ), 교육( )	여/부 ( )		
	재난, 정전,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람 및 동물)			
	소방, 보안, 비상전력 장치 등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상 훈련,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수의학적 프로그램이 있는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의학적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부 ( )		
	입.출입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가? - 입.출입요령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입.출입 관리대장을 기록.보존 -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관리 - 입실 전 소독 실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는가? - 방법 - 항목 - 주기			
	시설	시설은 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시설의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방충방서) 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미생물 등)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인가?				
(공간구획) 시설은 격리실(질병이 있는 동물의 격리, 진단 및 치료), 동물종별 사육공간, 전실, 특수실험실 등 목적에 따라 분리, 구획되어 있는가?				
(배수) 시설은 배수가 잘되며 배수로에 동물실험 등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며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는가?				
(채광조명) 시설은 안전과 동물실험 등에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온습도) 시설 및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가 있으며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여/부 (            )		
	(공조) 시설은 공기흐름이 원활하고 오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기 조화 시설이나 공기 정화 시설이 있으며 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가?	여/부 (            )		
	(동선) 사람, 동물, 물품(장비) 등의 동선이 분리 또는 구분되며 표시하고 있는가?			
	(시설) 시설 내 벽과 바닥, 천장 등을 시설사용목적에 맞게 내화성,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로 유지하는가?			
	(부대시설 위생)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시설 위생) 외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나 시설이 있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구분 보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부 (            )		
	(동물실험실) 동물부검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실험실을 갖추었는가? - 실험실 수 또는 확인한 실험실명(번호)	여/부/해당없음 (            )		
	(실험실 환경)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 등 동물실험과 동물과 사람의 안전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 장치/설비현황 :			
	(실험실 환경) 실험실에는 시험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사육실 환경) 사육실의 바닥과 벽이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마감재인가?			
	(사육실 환경) 사료, 깔짚, 사육용품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갖추었는가?			
	(사육실 환경)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는 적절하게 교환, 세척,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위생	(작업환경-환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유지하는가? 시설/장비현황 :		
(작업환경-방충방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가? - 시설/장비현황 :				
(개인위생) 작업자는 적절한 복장(작업복, 작업화, 작업장갑, 작업모 등)을 항상 착용하고 있는가?				
(위생) 시설 내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				
(위생) 시설 내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관리일지가 있는가?				
(위생) 세척, 소독 시설에 사용 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종사자들이 준수하고 있는가?				
(위생) 주기적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연구자의 안전	<p>연구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의 건강검진</li> <li>- 예방접종(예 : 광견병,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등)</li> <li>- 사고(동물에 물리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보고체계</li> </ul>			
	<p>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보호장비 지급</li> <li>- 재해유발물질 등에 따른 별도 보관장소 설치 및 관리</li> </ul>			
동물의 사용	<p>실험동물 검역실을 갖추고 있는가? 동물종별 수용을 위한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 등을 구비하고 활용하는가?</p>	여/부 (                    )		
	<p>동물구입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관여하며 실험목적과 시설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체계가 있는가?</p>			
	<p>동물을 수령할 때에 운송 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가?</p>			
	<p>동물 반입 시 수의사나 전문인력에 의해 검역하고 충분한 순화기간을 거쳐 반입하는가? - 검역업무담당</p>			
	<p>동물 관리와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가?</p>			
	<p>동물종, 계통별 특이사항을 고려한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가?</p>			
	<p>임신, 수술 등 특수사항을 고려한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가?</p>			
	<p>동물의 급이, 급수 관리와 실험에 맞는 사료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급이 용이성, 오염 여부, 영양과 급이량, 특수 영양성분의 공급, 사료 유통기한 확인, 급이 기록, 보관상태, 급수기 위생, 음수 검사, 급수기 관리, 음수의 소독 또는 멸균상태, 공급량 등</p>			
	<p>깔짚 등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공급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 깔짚 검사성적서, 흡수력, 분진도, 보관, 위생, 교환 빈도 등</p>			
	<p>행동풍부화물 등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공급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 동물종별 적정물품 공급, 풍부화물 관리 등</p>			
	<p>동물의 사육밀도와 동물종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가?</p>			
	<p>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의 전후 보고체계가 있는가?</p>			
	<p>동물용의약품 또는 사육물품의 관리체계가 있는가?</p>			
	<p>케이지, 펜 등 동물의 1차 사육공간(사육상자)의 관리가 적절한가? - 동물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표현이 가능한 환경 - 사료와 음수 섭취 용이성, 위생 -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 - 적정 동물 수 또는 동물 수용 등</p>			
	<p>사육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가? - 일일 온습도 편차, 환기 횟수, 조도, 소음, 진동 등</p>			
	<p>사육상자에는 실험동물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동물의 종, 계통, 시험기간 등)가 표시되어 있는가?</p>			
	<p>사육실내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 동물의 반입·반출시 관리자의 확인절차 마련 - 사육실 내 동물 사육현황 기록·관리</p>			
	<p>실험 후 동물검사를 실시하고 동물의 사후처리, 기증, 분양 등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가?</p>			

교육·훈련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 - 교육이나 훈련내용 - 주기			
	연구자와 위원을 위한 교육·훈련절차 및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 - 교육이나 훈련 내용 - 주기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계획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록	시설, 장비, 설비와 동물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작업장, 시설, 장비, 설비 등의 소독, 세척, 살균 및 청소 후에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구와 장비의 점검계획이 있으며, 유지보수의 기록이 있는가?			
	시설이나 운영문제 발생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보관장소는 작업장과 격리된 특정 장소에 있는가?			
	폐기물보관실에는 동물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재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사체 등 폐기물을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가? -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 사체처리 담당자 지정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관			
비상사태대응	재난, 정전,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람 및 동물)			
	소방, 보안, 비상전력 장치 등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상 훈련,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개선조치	동물복지, 사육이나 환경관리 등 위반사항 발생 시 보고 절차가 있는가? -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동물복지, 사육이나 환경관리 등 위반사항 발생 시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적절하게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의견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확인자: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별표 1]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비 지급(청구)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지급(청구)대상	비고
회의 참가비	20만원/1회	외부위원	대면 회의
심사·평가비	5만원/1건	외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사평가비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비	15만원/1건	(연구책임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비
자문료	포스텍 자문료 지급기준에 준함	외부전문가	동물실험 교육훈련 강사비 및 경비

- \* 회의참가비란,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와 자문료임
- \* 심사·평가비란, 외부위원이 교내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에 따른 자문료 성격임
-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비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주관/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비이며, 위원회 운영경비(회의참가비, 심사평가비, 자문료)로 집행됨